

檢 討 報 告

1. 提出者：瑞山市長

2. 提出日字：1998. 3. 31

3. 提案理由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항 및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4. 主要骨子

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제133조의 법령용어와 일치시키고자 “기금조성 및 운영”을 “기금설치 및 운영”으로 규정함(조례제명)

나.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2조 1항에 의거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게되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기타”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자체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령이나 지방재정법령에 적립기금으로 국·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제정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토록 규정함(안 제3조).

라. “시장은 기금운용 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안 제9조).

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0조 3항에 의거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함(안 제12조).

5. 檢討意見

-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 용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자는 것으로써,
- '98.1월 지방자치법 제155조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개정권고된 사항으로 본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법률용어를 명확하게하여 상위법에 위반소지를 없애고, 기금운용이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됨.